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93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

발 의 자 : 신정훈 · 김문수 · 황명선
강득구 · 이광희 · 강준현
권향엽 · 전진숙 · 문금주
장종태 · 김영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전문성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내용 중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문에서 삭제함(현행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의2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3조의2까지,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 제99조부터 제104조까지 삭제).
- 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설치함(안 제37조).
- 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함(안 제38조 및 제39조).
- 라.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 마.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지방재정 등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안 제47조).
- 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 사.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53조).
- 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함

(안 제57조).

자. 지방의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차.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75조).

카. 주민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제외함(안 제85조 및 제86조).

타.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앞의 “제1절 조직”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의 “제2절 지방의회의원”을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 앞의 “제3절 권한”을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지방재정 등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47조의2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앞의 “제4절 소집과 회기”를 삭제한다.

제53조의 제목 “(정례회)”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례회 운영과 임시회의 소집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앞의 “제5절 의장과 부의장”을 삭제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2 앞의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3조의2를 삭제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의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 앞의 “제7절 회의”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중 “이 법”을 “법률”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③ 그 밖에 의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5조 앞의 “제8절 청원”을 삭제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청원서의 제출) 주민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9조 앞의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를 삭제한다.

제89조 및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92조 및 제9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0절(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8조 앞의 “제11절 징계”를 삭제한다.

제98조의 제목 “(징계의 사유)”를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를 “지방의회의원을”로 한다.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2절(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절 조직</u>	<u><삭 제></u>
<u>제2절 지방의회의원</u>	<u><삭 제></u>
<u>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u>	<u><삭 제></u>
<u>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u> <u>의 비용을 지급한다.</u>	
<u>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u> <u>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u> <u>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u> <u>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u> <u>의정활동비</u>	
<u>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u> <u>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u>	
<u>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u> <u>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u> <u>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u> <u>여비</u>	
<u>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u> <u>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u> <u>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u> <u>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u> <u>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u> <u>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u> <u>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u>	

현행	개정안
제43조(검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읍면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	제43조(검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u>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u> <u>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u> <u>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u> <u>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u> <u>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u> <u>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u>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u>	

현행	개정안
<u>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u>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u> <u>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u> <u>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u> <u>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u> <u>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u>	

현행	개정안
<u>의 임직원</u> <u>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u> <u>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u> <u>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u> <u>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u> <u>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u> <u>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u> <u>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u> <u>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u> <u>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u> <u>할 때</u> <u>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u> <u>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u> <u>때</u> <u>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u> <u>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u> <u>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u> <u>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u> <u>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u> <u>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u> <u>다.</u>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 ③ (생략) <u>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u>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u>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u> <u>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u> <u>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u> <u>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3절 권한</u> <u>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u> <u>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u> <u>2. 예산의 심의·확정</u> <u>3. 결산의 승인</u> <u>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u> <u>5. 기금의 설치·운용</u> <u>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u> <u>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u>	<u><삭 제></u> <u>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지방재정 등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u>

현행	개정안
<u>설의 설치·처분</u> 8. <u>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u> 9. <u>청원의 수리와 처리</u> 10. <u>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u> 11. <u>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u> ② <u>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u>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u> 1. <u>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u>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u>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u>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u> <u>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u> <u>이사장</u>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u>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u> <u>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u> <u>출연 기관의 기관장</u> ② <u>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u> <u>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u> <u>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u> <u>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u> <u>송부하여야 한다.</u> ③ <u>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u> <u>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u> <u>례로 정한다.</u> <u>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u> <u>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u> <u>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u> <u>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u> <u>게 요구할 수 있다.</u> ② <u>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u> <u>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u> <u>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u> <u>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u>	

현행	개정안
<u>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u>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u> <u>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u> <u>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u> <u>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u> <u>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 <u>제4절 소집과 회기</u> <u>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u> <u>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u><신 설></u> <u>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u>	<u><삭 제></u> <u><삭 제></u> <u>제53조(회의) ①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u> <u>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정례회 운영과 임시회의 소집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u> <u>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u> <u>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 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의결로 정한다.</u> <u>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u>제5절 의장과 부의장</u> <u>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u> <u>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u> <u>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u>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u>	<u><삭 제></u> <u><삭 제></u> <u>제57조(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감독한다.</u> <u>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u> <u>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u> <u>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u> <u>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u> <u>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u> <u>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u> <u>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u> <u>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u> <u>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u> <u>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u> <u>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u> <u>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u> <u>다.</u> <u>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u> <u>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u> <u>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u> <u>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u> <u>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u> <u>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u> <u>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u> <u>의결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u> <u>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u> <u>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u> <u>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삭 제></u>
<u>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u> <u>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교섭단체가 된다.</u> <u>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u> <u>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u>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u> <u>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u> <u>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u> <u>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u>	<u>제64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의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u>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u> <u>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u> <u>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u> <u>정한 안건을 심사한다.</u>	<u><삭 제></u>
<u>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u> <u>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u> <u>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u> <u>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u> <u>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u> <u>을 둔다.</u> <u>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u> <u>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u> <u>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u> <u>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u> <u>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u> <u>다.</u> <u>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u> <u>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u>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u> <u>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u> <u>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u> <u>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u> <u>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u> <u>수 있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절 회의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	<삭 제> <삭 제> <삭 제> 제73조(의결정족수) ① ----- 법률 ----- -----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u>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u>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76조(의안의 발의)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의안의 발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그 밖에 의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u> <u>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u> <u>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u>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u> <u>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u> <u>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u> <u>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u> <u>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u>	
<u>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u>	<u><삭 제></u>
<u>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u>	<u><삭 제></u>
<u>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u>	
<u>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u>	
<u>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u>	

현행	개정안
제8절 청원	<삭 제>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청원서의 제출) 주민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삭 제>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삭 제>

현행	개정안
① <u>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u> <u>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u> <u>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u> <u>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u> <u>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u> <u>다.</u>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u> <u>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u> <u>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u> <u>고하여야 한다.</u> <u>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u> <u>자격심사</u> <u>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u> <u>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u> <u>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u> <u>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u> <u>허가할 수 있다.</u> <u>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u> <u>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u> <u>직에서 퇴직한다.</u> <u>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u> <u>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u> <u>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u>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u>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u> <u>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u> <u>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u> <u>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u> <u>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u>	<u>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u> <u>제10절 질서</u> <u>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u> <u>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u> <u>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u> <u>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u> <u>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u> <u>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u> <u>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u> <u>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킬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u> <u>제11절 징계</u> 제98조(<u>징계의 사유</u>) 지방의회는 <u>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u> 제99조(<u>징계의 요구</u>) ① <u>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u> <u>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u>	<u><삭 제></u> 제98조(<u>징계</u>) ----- <u>지방의회의원을</u> ----- ----- -----.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u>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u> <u>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u> <u>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u> <u>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u> <u>4. 제명</u>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삭 제>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u>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u> <u>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u>	<삭 제>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 <u>·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u>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u>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u>	<삭 제>

현행	개정안
<u>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u> <u>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u> <u>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u> <u>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u> <u>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 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u> <u>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u>	